

의안
번호

701

【울산광역시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09. 6. 25 · 중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9. 7. 2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09. 7. 9

2. 개정이유

가.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법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 제9조 → 제5조

나. 조문 용어 정리(안 제1조, 안 제7조, 안 11조)

▶ 규정에 의거 → 따라 ▶ 인 → 명

▶ 개의하고 → 시작하고

4. 근거법규

가. 평생교육법 제5조

《근거법규》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의견없음(2009. 6. 1. ~ 6. 21)

6. 검토의견 : 의견없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5조에 따라 ----- ----- -----추진함----- -----.</p>
<p>제7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7조(구성) ① ----- ---1명 ----- 15명 ----- -----.</p>
<p>②(생략)</p>	<p>②(현행과 같음)</p>
<p>③위원은 구 본청의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관할 교육청 교육장,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인과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의 장,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p>	<p>③ ----- ----- ----- 3명 ----- ----- -----.</p>
<p>④협의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 담당과장으로 한다.</p>	<p>④----- 1명 ----- ---.</p>
<p>제11조(회의 등) ①(생략) ②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1조(회의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시작하고 ----- -----.</p>
<p>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2조(수당 등) ----- -----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p>

자치행정과

1. 결산내용

□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과목별 구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익년도 이월액(C)				불용액 (A-B-C)	불용율 (%)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7,941,434	7,585,070	212,070	212,070	.	.	144,294	1.81
주민등록관리	81,175	73,847	7,328	9.02
동행정운영	983,258	977,657	5,601	0.56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230,796	221,852	8,944	3.87
자치역량강화	643,876	625,184	18,692	2.90
과거사피해자 진실규명 혁신역량 강화	13,519	12,499	1,020	7.54
열린구의정홍 보	89,099	67,375	21,724	24.38
재무활동	152,040	151,423	617	0.40
평생학습도시도 성	247	247
행정운영경비 (자치행정과)	444,427	207,627	212,070	212,070	.	.	24,730	5.56
행정운영경비 (동)	120,086	120,060	26	0.02
	5,182,911	5,127,299	55,612	1.07

□ 예산의 이체 사용

(단위 : 천원)

사업명	과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승인 일 자	비 고
			감액	증액		
합계		217,679		217,679		
평생직업교육	평생학습홍보	201-01	15,680		15,680	2008.2.27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문화체육과 ⇒자치행정 과)
		405-01	500		500	
	평생학습네트	201-01	2,520		2,520	
		201-02	2,000		2,000	
	워크구축	202-01	139		139	
		202-03	20,000		20,000	
		201-03	81,000		81,000	
	평생학습행사 (축제, 연수 등)	202-01	1,821		1,821	
		203-03	1,200		1,200	
		301-10	8,819		8,819	
		207-02	30,000		30,000	
	평생학습 정보 인프라 구축	307-02	20,000		20,000	
		308-06	34,000		34,000	

□ 다음연도 이월액

○ 명시이월

(단위:천원)

연 번	부서 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사유
합 계			220,000	7,930	212,070		
1	자치 행정 과	평생학습 홍보	15,000	5,000	10,000	-	평생학습도시조성비 로 사업기간 (‘08.10월~‘09.12월)미 도래
2		평생학습행사실시 (축제, 연수 등)	88,000	1,270	86,730	-	평생학습도시조성비 로 사업기간 (‘08.10월~‘09.12월)미 도래
3		평생학습행사실시 (축제, 연수 등)	3,000	1,660	1,340	-	평생학습도시조성비 로 사업기간 (‘08.10월~‘09.12월)미 도래
4		평생학습행사실시 (축제, 연수 등)	3,000	-	3,000	-	평생학습도시조성비 로 사업기간 (‘08.10월~‘09.12월)미 도래

5	평생학습 정보 인프라 구축	10,000	-	10,000	-	평생학습도시조성비로 사업기간('08.10월~'09.12월)미도래
6	학습지원	41,000	-	41,000	-	평생학습도시조성비로 사업기간('08.10월~'09.12월)미도래
7	학습지원	40,000	-	40,000	-	평생학습도시조성비로 사업기간('08.10월~'09.12월)미도래
8	학습지원	20,000	-	20,000	-	평생학습도시조성비로 사업기간('08.10월~'09.12월)미도래

□ 채권 현재액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고
		발생액	소멸액		
새마을소득특별지원	2,548	8,019	3,417	7,150	

□ 주민자치센터(14개동)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익년도 이월액(C)				불용액 (A-B-C)	불용율 (%)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계	6,396,965	6,326,808	-	-	-	-	70,157	1.09
동행정운영	983,258	977,657	-	-	-	-	5,601	0.56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230,796	221,852	-	-	-	-	8,944	3.87
행정운영경비 (동)	5,182,911	5,127,299					55,612	1.07

-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7,941,434천원이며, 이중 7,585,070원이 집행되고, 명시이월이 212,070천원이며, 불용액이 144,294천원이 발생 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1.81% 임.
- 이중 동주민센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6,396,965천원이며, 6,326,808천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70,157천원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1.09% 임.

2. 검토의견

- 세출결산내역 60페이지 401-04(시설비) 방범용CCTV설치 2억9천만원중 2억7천605만7천4백원은 집행하고 1천394만2천6백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에대한 집행현황 설명과,
- 세출결산내역 66페이지 307-02(민간경상보조)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보조금으로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202-03(국외여비) 평생학습관계자 해외 연수비가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가운데 769만3천원은 집행되고 이의 61%인 1천230만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에 대한 집행 내용과 불용처리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